

2026년 이상기온 대응 과수 안정생산 지원사업 시행지침

1. 사업목적

-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의 잦은 발생으로 과수 생산량 및 품질 저하
-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과수 농업의 안정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

2. 추진방향

- 기존 노지과원에 이상기온 대응을 위한 다기능 시설 설치 지원
- 저온 및 폭염기 시설 이용으로 고품질 안정 생산 도모

3. 지원근거

-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(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)
-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

4. 사업시행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6. 1월 ~ 12월
- 사업량 : 3ha
- 사업비 : 240,000천원(군비 120,000, 자부담 120,000)
- ※ 1인당 지원한도 6,500천원 ~ 45,000천원(사업내용별 상이)
- 사업내용 : 햇빛차단망, 열풍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
- 사업대상자 :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예천군 주소를 둔 과수 재배 농업인
- 사업단가

사업명	지원기준	지원단가(천원)	보조금액(천원)	비고
햇빛차단망	0.5ha	45,000	22,500	보조 50%
열풍방상팬	1식	15,000	7,500	
미세살수장치	0.5ha	6,500	3,250	

-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요건 기준
 - － 이상 기온으로 인한 저온 및 고온피해 예방 시설 필수 설치
 - － 햇빛차단망은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 구입비 지원
 - － 열풍방상팬은 서리 및 냉해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(난방, 작업용 송풍 금지)
 - － 예천군 관내 본인 소유 농지에 한하여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함
단)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(10년 이상), 토지사용 이용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

5. 사업추진요령

가. 사업추진절차

군	: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(단,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치체선정) :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: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
읍면	: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, 수요조사 결과 제출 :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: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: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
농업인	: 사업신청, 사업추진, 정산서 제출

대상자 선정보고, 정산보고 ↑ ↓ 사업계획시달, 자금교부

사업신청 ↑ ↓ 사업확정, 사업비 집행

가. 업체선정

- 업체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, 사후관리(A/S)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
 - *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(점검·수리시스템) 확보 등 철저
-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 되었거나,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
 - 시설·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·설치 지도

나. 사업 추진단계

- 사업대상자는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,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읍·면은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
- 특별한 사유없이 상반기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
-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,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~5년간 과수관련 국·도비 사업 지원 제한
-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,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

※ 1사업 1통장 원칙

※ 계좌 거래 원칙(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),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

다. 사후관리단계

- 읍·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·장비·기자재 등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」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
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」에 따라 보조금 3천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지원대상자(생산자 단체)별 관리대장을 비치·활용하고, 완료된 시설·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-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, 임의처분,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
	부터	까지	
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	시설설치 완료시	10년간	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(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)
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	장비구입시	5년간	

-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『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』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, 행정벌 부과
 -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
 -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(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)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 -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
 -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지침 준용

※2026년 과수·채소·특작 분야 국·도비사업 시행지침

교 부 신 청 서

1. 보조사업명

2. 사업소재지

3. 보조금 신청액

4. 자기자본 부담액

5.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

6. 사업수행기간

7. 기 타

1. 사 업 명

2. 사업내용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위와 같이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
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년 월 일

주 소
단체명(성명)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 :
성 명 : (인)

※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
○ 확인자 : 소속 직 성명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예천군수 귀하

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○ 사 업 명 :

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,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(개인보조포함)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별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~ 제40조) >

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- 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제39조(벌칙)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- 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- 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제40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년 월 일

□□□단체 대표 (서명)

□□□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(서명)

예천군수 귀하

1. 보조사업명 :

2. 소요사업비 :

3. 사업개요

- 사업취지 및 목적
- 사업기간 :
- 사업소재지 :

4. 추진실적

세 부 사 업 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 업 비(천원)			비 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5. 입금계좌번호 :

붙 임 :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.

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사업비 집행 세부내역

- 1. 사 업 명 :
- 2. 사업소재지 :
- 3. 보조사업자 :
- 4. 사업비집행 세부명세

세부사업명 (시설명)	단 위	수 량	단 가 (천원)	집행액 (천원)	비 고
계					

보 조 금 정 산 서

- 1. 사 업 명 :
- 2. 사업기간 :
- 3. 보조금 집행사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집 행 액	잔 액	비 고
계				

※ 첨부 :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영수증, 사진대지 등)

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사업완료확인서

- 1. 사업명 :
- 2. 사업기간 :
- 3. 사업자
 - 주소 :
 - 성명 :
- 4. 사업완료 확인내역

세부사업명	사업량	단가 (천원)	사업비(천원)			비고
			계	보조금 (%)	자부담 (%)	

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

년 월 일

확인자) 소속) 직) 성명) (인)

예천군수 귀하

사업진행대지			
농가명 (대표자)		사업장 위치	
『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,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』			